

## 7. 멕시코 (Mexico)

###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	자영자 : 임의적용
보험료율(가입자/사용자)	8.65% (1.75% / 6.9%)	8.65% (1.75% / 6.9%)	일(Daily)기준
노령연금 수급요건	개인계좌 : 납부기간 1,250주 이상, 65세 사회보험 : 납부기간 500주 이상, 65세(근로 중단 필수)	개인계좌 : 납부기간 1,250주 이상, 65세 사회보험 : 납부기간 500주 이상, 65세(근로 중단 필수)	-
노령연금 지급방식	개인계좌 : 인출 또는 연금 중 선택 사회보험 : 납부기간의 최종 250주의 평균소득 변동비율(소득 반비례) + 500주 초과 납부기간당 연 증가분	개인계좌 : 인출 또는 연금 중 선택 사회보험 : 납부기간의 최종 250주의 평균소득 변동비율(소득 반비례) + 500주 초과 납부기간당 연 증가분	-
일시금	개인계좌 : 총 계좌잔액 지급	개인계좌 : 총 계좌잔액 지급	노령연금 수급요건 미충족 시 지급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3년(사회보험)
- **현행법** : 1973년(사회보험), 1995년(개인계좌), 1997년 시행, 2004년(사회개발)

### 2 제도형태

- **보편적 제도, 의무개인계좌, 사회보험, 사회부조**

※ 부과방식(pay-as-you-go)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1997년 7월 1일자 신규 입국자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단계적 폐지 중임. 1997년 7월 1일 이전 사회보험제도 적용 대상자였던 퇴직 혹은 장애, 자영업 가입자는 사회보험 프로그램, 의무개인계좌 프로그램 중에서 급여수급 선택 가능 (정부가 사회보험 급여를 선택한 근로자의 계좌잔고를 파악하여 보험료 지급)

- **보편적 제도와 사회부조** : 멕시코 거주 시민
- **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보험**
  - 민간부문 근로자 및 협동조합 조합원
  - 임의적용 : 가족근로자, 특정 자영자, 무급근로자, 가사근로자, 사용자, 소작농부 및 지역 공동체 농부, 소규모 지주, 다른 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공공부문 근로자
  - 특별사회보험제도 : 석유 관련 근로자,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 군인
- **사회부조** : 멕시코 합법적 거주자

- **가입자**
  - 보편적 제도 및 사회부조 : 없음
  - 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보험
    - 일 적용소득의 1.125%(노령급여), 0.625%(장애, 유족급여)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 법정 월 최저임금
    - 법정 일 최저임금은 102.68 pesos, 북쪽 국경지역 지자체는 176.72 pesos (2019.1월)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소득 : 일일 UMA(기준급, Unidad de Mediday Actualizacion)의 25배
    - 일별 UMA는 84.49pesos(2019.2월)
    -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족수당에 따른 결혼일시금 재원도 총당
- **자영자**
  - 보편적 제도 및 사회부조 : 없음
  - 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보험
    - 멕시코시티 법정 일 최저임금의 6.275%(노령급여), 2.375%(장애, 유족급여)
    - \* 법정 일 최저임금 : 80.04pesos(2017 12월 기준, 88.36peso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 법정 월 최저임금
    - 법정 일 최저임금은 102.68 pesos, 북쪽 국경지역 지자체는 176.72 pesos (2019.1월)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 일일 UMA(기준급, Unidad de Mediday Actualizacion)의 25배
    - 일별 UMA는 84.49pesos(2019.2월)
    - 자영자의 의무개인계좌 보험료는 가가족수당에 따른 결혼일시금 재원도 총당

## ○ 사용자

- 보편적 제도 및 사회부조 : 없음
- 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보험
  - 적용 임금의 5.15%(노령급여), 1.75%(장애, 유족급여)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 법정 월 최저임금
  - 법정 월 최저임금은 102.68 pesos, 북쪽 국경지역 지자체는 176.72pesos (2019.1월)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 일일 UMA(기준급, Unidad de Mediday Actualizacion)의 25배
  - 일별 UMA는 84.49pesos(2019.2월)
  - 사용자의 의무개인계좌 보험료는 가족수당에 따른 결혼일시금 재원도 충당

## ○ 정부

- 보편적 제도 및 사회부조 : 전액부담
- 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보험 : 적용소득의 0.225%+법정 월 최저 임금의 15배까지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 개인계좌에 평균 일일 5.18 pesos(2018)의 균일액 (노령연금) + 가입소득의 0.125%(장애, 유족급여)+최저보장연금 총비용
  - 일별 UMA는 84.49pesos(2019.2월)

## 5

###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 노령급여

- 노령연금(보편적 제도) : 68세(65세의 원주민이자 2018년 12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보험료 납부기간이 1,250주 이상인 65세 도달자. 1,250주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보험료 계속 청구 가능
  - 조기연금 : 개인계좌잔액이 법정 최저연금 및 유족연금의 30% 이상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경우에는 모든 연령에서 신청 가능
  - 법정 월 최저연금액 : 3,123.18 pesos
  - 실업근로자 노령연금 : 1,2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60세 도달자
  - 최저보장연금 : 65세(60세 : 실업상태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1,2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계좌잔액이 법정 최저연금을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 부양가족 부가급 : 여성 배우자, 동거인, 16세 미만 자녀(학생은 25세, 장애아는 무제한), 부양부모 (수급자가 배우자, 동거인, 자녀가 없을 경우)에게 지급
  - 급여는 상호협정에 의거 해외지급 가능. 가입자가 상응하는 행정비용 부담. 멕시코를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 2년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청구가능
- 노령일시금(의무개인계좌) : 보험료 납부기간이 1,250주 미만인 65세 도달자(실업상태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60세)

- 노령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 이상인 65세 도달자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어야 함
  - 실업근로자노령연금 : 50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60세 도달자
  - 부양가족 부가급 : 여성 배우자, 동거인, 16세 미만 자녀(학생은 25세, 장애아는 무제한), 부양부모(수급자가 배우자, 동거인, 자녀가 없을 경우)에게 지급
  - 상시간병수당 :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
  - 급여는 상호협정에 의거 해외지급 가능. 가입자가 상응하는 행정비용 부담. 멕시코를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 2년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청구가능

## ○ 장애급여

- 장애연금(의무개인계좌)
  - 전년 대비 정상소득능력의 75% 이상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고 1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또는, 250주 이상 보험료 납부하고 정상소득능력의 50~74%를 상실한 것으로 판정된 자
  - 부양가족 부가급 : 개인계좌 장애연금 외에 여성 배우자 혹은 동거인, 16세 이하의 자녀(학생은 25세, 장애아는 무제한), 부양부모(수급자가 배우자, 동거인, 자녀가 없을 경우)에게 지급
  - 상시간병수당 :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
  - 최저보장연금 : 개인계좌 장애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계좌잔액이 법정 월 최저연금을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지급
  - 월 최저연금액 : 3,123,18 pesos
  - 멕시코 사회보장청이 정상소득능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함
  - 급여는 상호협정에 의거 해외지급 가능. 가입자가 상응하는 행정비용 부담. 멕시코를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 2년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청구가능
- 장애연금(사회보험)
  - 1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소득능력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가입자는 6개월의 대기기간 종료 후 다른 업종에서 다른 사용자와 계속하여 근로 가능
  - 부양가족 부가급 : 사회보험 장애연금 외에 여성 배우자, 동거인, 16세 미만 자녀(학생은 25세, 장애아는 무제한), 부양부모(수급자가 배우자, 동거인, 자녀가 없을 경우)에게 지급
  - 상시간병수당 :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
  - 멕시코 사회보장청이 정상소득능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함
  - 급여는 상호협정에 의거 해외지급 가능. 가입자가 상응하는 행정비용 부담. 멕시코를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 2년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청구가능

## ○ 유족급여

- 유족연금(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보험료 납부기간 150주 이상인 경우 지급(사망이 반드시 산재로 인한 필요는 없음)
- 유족연금 수급권자
  - 사망자 사이에서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동거인
  - 사망자가 혼인당시 55세 미만인 경우 사망자와 6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한 자녀가 없는 배우자
  - 사망자가 혼인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사망자와 12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한 자녀가 없는 배우자
  -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한 자녀 없는 동거인
  - 16세(학생인 경우 25세, 장애자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미만 자녀
  - 다른 수급 가능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부모
- ※ 모든 수급가능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부양되었어야 함
- 상시간병수당 :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
- 배우자연금 수급자가 재혼, 동거 시 중지됨
- 재혼일시금 : 재혼, 동거 시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지급
- 급여는 상호협정에 의거 해외지급 가능. 가입자가 상응하는 행정비용 부담. 멕시코를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 2년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청구가능
- 장제비(사회보험)
  - 사망 전 9개월 내에 12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노령이나 장애 연금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
- 유족일시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보편적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지명된 유족에게 지급
  - 지명된 유족 없을 시 비지급
  - 지명된 유족일시금 수급자는 유족연금 혹은 장제비 수급받지 않았어야함

## 6

###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급여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지급액 : 월 1,275 pesos
  - 지급시기 : 2개월마다 지급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가입자는 2가지 중 선택 가능 : 프로그램 인출(programmed withdrawals) 또는 연금(annuity)
  - 조기연금 : 가입자는 프로그램 인출(programmed withdrawals)과 연금(annuity) 중에서 선택 가능

- 실업근로자 노령연금 : 개인계좌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최저보장연금 : 개인계좌잔액방식의 노령연금월액과 법정 최저연금월액 사이의 차액을 지급
- 월 최저연금액 : 3,123,18 pesos
- 피부양자보조금
  - . 여성 배우자 및 동거인 : 노령 연금액의 15%
  - . 자녀 : 연금액의 10%
  - . 부양 부모 : 연금액의 10%
- 지급 일정 : 1년에 12개월 지급 및 13개월 차 크리스마스 급여 지급(보조금을 제외한 1개월분의 연금액 지급)
- 급여조정 : 연금액은 매년 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 노령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의 최종 250주의 평균소득의 변동 비율(소득에 반비례) + 50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매년 증가분이 가산
  - 실업근로자 노령연금 : 사회보험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월 최저연금액 : 3,123.18 pesos
  - 피부양자보조금
    - . 여성 배우자 및 동거인 : 사회보험 노령연금액의 15%
    - . 자녀 : 연금액의 10%
    - . 부모 : 연금액의 10%
  - 상시간호수당 : 가입자 노령연금의 15% 지급
  - 크리스마스 보너스 : 보조금을 제외한 1개월분의 연금액 지급
  - 연금액은 매년 2월 물가변동률에 의해 조정
- 노령일시금(의무개인계좌)
  - 가입자 총 계좌 잔액 일시지급

## ○ 장애급여

- 장애연금(의무개인계좌)
  - 최종 보험료 납부기간 500주 동안의 조정된 평균소득의 35% 지급
  - 계좌잔액이 법적 최소 월납부액 초과시, 가입자는 초과액만큼 인출 및 연금(annuity) 구매 혹은 유족연금 신청 가능
  - 월 최저연금액 : 3,123.18 pesos
  - 피부양자보조금
    - . 부인 및 동거인 : 개인계좌 장애연금액의 15%
    - . 자녀 : 연금액의 10%
    - . 부모 : 연금액의 10%
  - 상시간호수당 : 개인계좌 장애연금액의 20%까지 지급
  - 최저보장연금 : 가입자가 개인계좌방식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연금월액과 법정 최저연금월액 사이의 차액을 지급
  - 지급 일정 : 1년에 12개월 지급 및 13개월 차 크리스마스 급여 지급(보조금을 제외한

1개월분의 연금액 지급)

- 연금액은 매년 2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의해 조정
- 장애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의 최종 250주의 평균소득의 변동 비율(소득에 반비례) + 50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증가분이 가산
  - 피부양자보조금
    - 부인 및 동거인 : 사회보험 장애연금액의 15%
    - 자녀 : 연금액의 10%
    - 부모 : 연금액의 10%
  - 월 최저연금액 : 3,123,18 pesos
  - 상시간병수당 : 사회보험 장애연금액의 20%까지 지급
  - 지급일정 : 1년에 12개월 지급 및 13개월 차 크리스마스 급여 지급(보조금을 제외한 1개월분의 연금액 지급)
  - 연금액은 매년 2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의해 조정

## ○ 유족급여

- 배우자연금(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보험)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90% 지급
  - 상시간병수당 : 유족배우자(동거인)에게 연금액의 20%까지 지급
  - 재혼일시금 : 유족배우자(동거인) 재혼시 3년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고아연금
  -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 지급
  - 완전고아는 연금액의 30% 지급
  - 수급권이 종료되는 경우, 최종급여로 사망자 연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됨
- 피부양부모연금 : 배우자, 동거인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대상부모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 지급
- ※ 모든 유족연금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장애연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수급권 있는 유족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연금액은 재산정 가능
- 장제비(사회보험)
  - 일일 UMA 60.8일분의 일시금 지급
  - 일일 UMA는 84.49 pesos(2019.2월 기준)
- ※ 연금액은 매년 2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의해 조정
- 유족일시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1,275 pesos의 일시금 지급

- 복지국
  - <http://www.gob.mx/bienestar>
  - 일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 [www.imss.gob.mx](http://www.imss.gob.mx)
  - 의회, 기술위원회, 감독위원회,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음
  - 의무개인계좌제도 관리.감독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관리
  
- 퇴직저축제도 국가위원회(CONSAR)
  - [www.gob.mx/consar](http://www.gob.mx/consar)
  - 연금기금운용회사에 대한 감독
  
- 개별 연금기금운용회사
  - 개인계좌 관리

<2019년 ISSA 자료>